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법률 제5393호('97. 8. 28) 및 대통령령 제15672호('98. 2. 24) 호로 개정. 공포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이 98. 3. 1일부로 시행되면서
- 지방조정위원회의 처리대상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용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 개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 명칭 변경
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(지방환경위원회) →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 (지방조정위원회)
- 위원의 임기조정 (3년 → 2년) (법 제7조)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조정비용(수수료)에 관한 조문 변경 (법 제48조 → 제63조)
- 법 제63조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알선. 조정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자 및 조정에 참가를 신청하는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□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□ 신.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□ 관련법령(발체)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명 “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- 제1조 중 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”을 “환경분쟁조정법”으로, “제10조 제2항, 제47조 및 제48조 제2항”을 “제15조 제2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”으로,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- 제2조 중 임기는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, 제4항 제5항의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- 제3조 중 “제47조”를 “제6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”로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, 제1항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- 제4조 중 “제48조 제2항”을 “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”으로,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